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희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83

발의연월일: 2025. 3. 11.

발 의 자:박희승·추미애·서영교

김원이 • 박성준 • 박상혁

안호영 · 김태년 · 김정호

소병훈 · 김동아 · 이개호

김준혁 · 남인순 · 박균택

어기구 • 한정애 • 김남희

김승원 • 이춘석 • 한민수

윤준병 · 김한규 · 임미애

문진석 • 위성곤 • 민병덕

전진숙 • 정준호 • 황명선

이워택 • 박용갑 • 김윤덕

김영호 • 박민규 • 김기표

김종민 · 오세희 · 오기형

정일영 • 박지원 • 박해철

김 윤 · 임호선 · 정진욱

손명수 · 장종태 · 이용선

이재강 • 이건태 • 위성락

신정훈 의원(5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사법부 판결에 부정, 불복하며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 통

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일상화되고, 심지어 법관 개개인에 대한 살해 협박 등이 빈번해지고 있으며,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까지 발생하였 음.

이는 특정 재판을 기피하는 요인이자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, 우수한 법관 인력의 유지 및 신규 법관 유인에도 악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사법부 역량 자체를 약화시킬 우려가 큼.

「대한민국헌법」에 따라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기에, 이러한 과도한 수 준의 '사법의 정치화'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.

그렇기에 국가도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,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현행 법원보안관리대의 목적에 법관,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명시하고, 신변보호 및 청사 경비 등에 대비하여 청사 외에서의 직무 집행 근거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는 한편 국가가 필요한 경비, 인력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조직의 명칭을 법원경비대로 수정하는 등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55조의2 등). 법률 제 호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의2의 제목 "(법원보안관리대)"를 "(법원경비대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질서유지 및"을 "질서유지, 법관과 법원직원의 신변보호 및"으로, "법원보안관리대"를 "법원경비대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법원보안관리대"를 "법원경비대"로, "내에 있는 사람이"를 "내외에서"로, "경우에는 이를"을 "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"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법원보안관리대의"를 "법원경비대의"로, "내외"로, "있다"를 "있으며, 출입문 등 법원 청사 외부의 위해로부터 출입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업무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법관 또는 법원직원을 협박하는 경우
- ⑤ 국가는 법원경비대가 그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, 인력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제60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 중 "받는다"를 "받

으며, 제2항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관하여 대법원장 또는 각급 법원의 장의 지휘를 받는 다"로 한다.

- ②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의 장은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5조의2(법원보안관리대) ① 법	제55조의2(법원경비대) ①
정의 존엄과 <u>질서유지 및</u> 법원	질서유지, 법관과 법원
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	직원의 신변보호 및
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안관리	법원경비대
<u>대</u> 를 두며, 그 설치와 조직 및	
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법	
원규칙으로 정한다.	
②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	② <u>법원경비대</u>
법원청사 <u>내에 있는 사람이</u> 다	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기	<u>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</u> -
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(有形	
力)을 행사하거나 경비봉, 가스	
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	
수 있다. 이 경우 유형력의 행	,
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	
쳐야 한다.	<u>.</u>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업무
	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
	법관 또는 법원직원을 협박하
	<u>는 경우</u>
<u>4.</u> (생 략)	<u>5.</u> (현행 제4호와 같음)

③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 에 방해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 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 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.

④ (생략) <신 설>

제60조(경찰공무원의 파견 요구) 제60조(경찰공무원의 파견 요구) ① (생략) <u><신</u>설>

<신 설>

3	법원경	비대의			
		<u>내</u> 도	<u> </u>		
				- <u>있으</u>	며,
출인	문 등	법원	청사	외부	.의
위하	로부터	출입기	자를	적극	보
<u>호</u> 히	·기 위학	한 조치	지를 :	취하여	야
한디	<u>-</u> .				
	- / - 1 - 11 - 1	-1 A \			

- ④ (현행과 같음)
- ⑤ 국가는 법원경비대가 그 업 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. 인력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.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의 장 은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 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.

② 제1항의 요구에 따라 파견 된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<u>받는다</u>.

<u>4</u>
<u>받으며, 제2항의 요구에</u>
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신
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
에 관하여 대법원장 또는 각급
법원의 장의 지휘를 받는다.